성전환 학생 권리에 관한 법무장관실 및 주 교육부 공동성명

양 부처는 2025년 1월 29일자 행정명령(EO) 14190 및 K-12 학교에서 성전환 학생의 사회적 전환과 운동경기 참여 지원을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진 2025년 2월 5일자 행정명령의 적용과 관련하여 학군 관계자 및 기관으로부터 수많은 문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정명령은 뉴욕 공립학교의 성전환 학생과 개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들 행정명령은 Title IX(타이틀 나인) 속 "성"의 의미를 제한하여 성정체성을 제외합니다. 대통령은 이를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칙 제정을 위해서는 국회 제정법 또는 최소한 고지 및 의견제출에 의한 규칙제정(notice-and-comment rulemaking)이 필요합니다. 주 교육부(State Education Department)에서 과거 평했듯이 대통령의 이러한 정책 성명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아울러, 주법은 시설(화장실 및 라커룸 등) 사용의 권리 및 성전환 학생의 성정체성과 일치하는 운동 팀에 참여할 권리를 포함하여 성전환 학생을 위한 강력한 보호 조치를 계속 제공합니다. 성전환 학생에 대한 불법적 차별에는 성전환 학생의 성정체성과 출생 시 지정된 성별에 대한 질문 및 성전환 학생이 요청한 이름이나 대명사 사용을 거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특히, 2025년 2월 5일 행정명령(EO)에 언급된 연방 법원의 판결은 2024년 규정을 금지하면서도, 해당 금지 명령이 "어떠한 학교도 성전환 학생과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주(州) 또는 지역 법률이나 규정을 준수하는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재정 지원을 보류하겠다는 대통령의 협박이 위협적임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협박은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법무장관은 재정권(power of the purse)이나 지방 법집행기관의 권한으로 행정부의 정책 목표를 추진할 수 없다"(*City of Chicago v. Barr*, 961 F3d 882, 887 [7th Cir 2020]). 바꿔 말하면, 대통령은 의회의 권한을 사적으로 행사하거나 적절한 법적 절차를 우회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양 부처는 "일반 학교에 관한 법률"(교육법 § 306[1])인 성표현 차별금지법(Gender Expression Non-Discrimination Act, GENDA)을 지지하는 데 전념합니다. 교육구는 주법을 계속 준수해야 하며, 주 교육부와 법무장관실은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우리 주의 약속을 옹호하는 학군 및 교육자들을 지지합니다.